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3일 10시 19분



목차

목차	2
공지사항	3
주택 임대차 계약 잊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!	3

주택 임대차 계약 잊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!

2024.04.16 조회수 359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담당자 구나운 연락처 061-659-3353

□ 제도기간

- 당초 : 2024. 5. 31.까지
- 변경 : 2025. 5. 31.까지 (1년 연장)

□ 신고제 개요

- 신고대상
 - 신고 시행일(2021. 6. 1.)이후 체결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계약
 -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
- 신고의무자: 임대차 계약 당사자 공동신고
 - ※계약서 제출시 일방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
- 신고기한: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
- 신고방법: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(<http://rtms.molit.go.kr>)
- 제출서류: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차신고서
- 과태료 부과: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첨부파일

[전체\(Zip\)다운로드](#) 스마트알리미 전단지.jpg (19 hit/ 837.5 KB) ↓[미리보기](#)[목록](#)

< 이전글

2024년 여수시 관광기념품 공모전

다음글 >

2024년 「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」 대상자 모집

Yeosu Web Contents

